

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				처리기간
				3일
①승 계 를 하는사람	성 명 (법 인 명)	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	주 소	(전화:)		
②승 계 를 받는사람	성 명 (법 인 명)	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	주 소	(전화:)		
③영 업 장	명 칭 (상 호)	변 경 전	변 경 후	
	영업의종류			
	허가(신고)번호			
	소 재 지	(전화:)		
④승계사유	☐ 양도·양수 ☐ 상속 ☐ 기타()			
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 제26조제 3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 1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 국 립 수 의 과 학 검 역 원 장 귀하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				
※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			
구비서류	신고인(대표자) 제출서류		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
영업양도의 경우	양도·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·양수계약서 사본 등		양도·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	수수료
상속의 경우	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		가족관계증명서(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)	1만원
그 외의 경우	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	없음	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신고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				

(뒤 쪽)

※ 신고안내

제출하는 곳	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시 · 도 시 · 군 · 구	처 리 부 서	축 산 과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	-------

<유 의 사 항>

- 영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-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양도·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③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는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기재하고 [예: 도축업(소)],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·유가공업·알가공업중 해당되는营业을 기재하며 [예: 축산물가공업(식육가공업)],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·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·우유류판매업·축산물수입판매업·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중 해당되는 营业을 기재합니다 [예: 축산물판매업(식육판매업)].

행정처분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

-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(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)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.

<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>

처분 받은 날짜	행정처분 내용	행정처분 사유

※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왼쪽 란에 “없음”이라고 적습니다.

※ 양도·양수 허가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

-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,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재재발된 때에는 「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」 제41조 및 별표 11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.

년

월

일

양도인 성 명:

주 소:

양수인 성 명:

주 소:

(서명 또는 인)

(서명 또는 인)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